

## 거주비자 (1년) Visa de Residencia (RS)

거주비자(RS)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① 도미니카공화국에 RS 비자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직계가족으로서 현지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신청인의 배우자, 미성년의 자녀 까지만 해당 사항)
- ②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을 하여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 한국인
- ③ 투자자로서 거주비자 (최소 USD200,000 이상): **해당 문서 4-5 페이지 참고**
- ④ 이자 혹은 금리 소득자로서의 거주비자: **해당 문서 6-7 페이지 참고**
- ⑤ 연금수령자 & 은퇴연금 수령자로서 거주비자 :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에서 발급 받으신 거주비자(RS) 비자는 유효기간이 60 일이며, **입국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자신청서류 원본 일체를 가지고 이민청을 방문하여 다시 수속을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현지 이민청에서 서류 보완의 의미로 추가 요청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 이민청에서 거주증(Tarjeta de Residencia)을 발급받게 되면 갱신은 도미공 현지 이민청에서만 이루어 집니다. (최초 거주 비자는 기간이 1년 입니다.)

**위의 ①, ② 에 해당하는 거주비자 신청: 비자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비자 사유서 (Carta de solicitud de visa sin notarizar: 법무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없음 (스페인어로 작성)

해당 대사관의 영사과 혹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앞으로 신청자의 이름으로 작성. 신청인의 국적, 거주지, 직업, 도미니카공화국으로의 방문 목적, 도미니카공화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 혹은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배우자의 이름, 국적, 거주지를 적고 서명하여 제출.

**예문 참고: 4페이지 참고.**

### 2. 비자신청양식서 (Formulario de Visa)

대사관홈페이지 [www.embadomkr.gob.do](http://www.embadomkr.gob.do), 도미니카공화국 영사홈페이지 [www.consuladord.com](http://www.consuladord.com) 에서 출력. 컴퓨터로 작성 혹은 읽기 쉬운 활자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양쪽 검지 지문, 서명 포함 그리고 미성년의 경우도 서명란에 이름으로 표기)

### 3. 사진 (Una fotografia)

1 매 (사이즈 4cm x 5cm) 정면 사진으로 흰 바탕, 안경 미착용

#### 4. 여권 원본 (Pasaporte Original)

최소 18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 5. 주민등록증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주민등록증 컬러 사본, 만약 출생 국가가 아닌 다른 제2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거주증 사본

#### 6. 범죄기록조회서(Certificado de No Antecedentes penales)

관할 기간에 요청하여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공적 문서로 최근 5년 거주한 국가의 경찰청 혹은 (연방 국가의 경우 연방당국) 으로부터 확인 받은 문서 제출.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미성년자의 경우 불필요)

#### 7. 기본증명서(Certificado Básico) 혹은 출생증명서(Acata de Nacimiento)

주민자치센터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문서.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 8. 건강진단서 (Cerficiado Médico)

신청인이 전염성이 있는 병력을 앓았던 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한 해당 국가의 병원이나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음.

(건강진단서 :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폐결핵, 매독/ AIDS)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 9. 결혼증명서(Acata de Matrimonio): 기혼자의 경우

- 배우자가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인 경우, 반드시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선거호적등록부(Registro Civil de la Junta Central)에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배우자의 주민등록증(Cedula) 사본도 함께 제출

- 두 사람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한국에서 발급 받은 혼인증명서를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법무부)받아 제출.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거주권을 가진 배우자의 거주증(Tarjeta de Residencia)와 주민증(Cedula) 사본도 함께 제출

미성년의 자녀가 RS 비자 신청시, 부모의 결혼증명서 혹은 미성년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모의 도미니카공화국 거주증 (스페인어로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는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

#### 10. 기타 국가에서 받은 비자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11. 보증서[Carta de Garantia]: 보증인은 초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해야 하며, 보증서 내용은 보증인이 비자 신청인에게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체류도중 일신상의 이유로 송환 또는 추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있어서 보증인이 보증할 수 있다는 내용.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청 인증 받아 오셔야 합니다(Notarizada y legalizada en la 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Dominicana)

*Mediante la cual se responsabilice a los gastos de manutención y repatriación, respeto a las condiciones morales y económica del extranjero, Firmada por este y dos testigos, quien será el garante ante la DGM en su proceso de solicitud de residencia temporal en el país, debidamente notariada y legalizada en la 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ublica.*

❖ **보증인의 재정증빙서류:**

**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Carta Bancaria), 자동차소유등록증(Matricula de Vehículo), 부동산소유권증서(Titulo de la Propiedad en la República Dominicana), 재직 증명서(근무 기간,직책, 급여 명시된) 중 1가지 선택 제출 가능**

**11. 재정증빙서류(Documentos que demuestran solvencia económica): 가능한 서류 중 택 1**

- \* **은행잔고증명서** - 국내 혹은 외국 은행에서 최근 발급 받은 증명서 / 영문 혹은 국문(국문의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 \* **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책, 급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영문 혹은 국문 (국문의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스페인어의 경우 그대로 제출
- \* **재산증명서**- 부동산, 동산 소유증명서 원본/ 국문의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 \* **경제적 지불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국문의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미성년자의 자녀가 비자 신청인일 경우, 부모님의 재정증빙서류로 제출**

(스페인어로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는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

**12. 비자 인터뷰 신청 (모든 영사 업무는 오전만)**

전화나 이메일로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일을 예약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인터뷰해야 함.

**13. 비자발급 소요시간 (모든 영사 업무는 오전만)**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여 비자가 승인된 것은 아니며, 신청접수는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인의 비자를 접수하고 검토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로 발송한다는 것을 의미함. 예상 소요시간은 최소 3주. 그러나 최종결정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에서 결정하며,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은 통보를 받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됨. 즉, 주한도미니카공화국 영사직원에게 비자 승인 결정권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이 비자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환불이 안 되는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유하며, 혹 비자 취득 소요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져서 미리 구입한 항공권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는 대사관의 책임이 없음을 미리 공고함.

#### 14. 비자 수수료

인터뷰 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하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외화계좌인 관계로 인터넷 뱅킹은 어려우십니다.

가까운 KEB하나은행에 가셔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 수취인: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 미화 U\$100.00
- KEB하나은행
- 계좌번호: 201-890010-11338

#### 참고사항: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화로 2258 외교센터 6층  
(양재역 12번출구)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postille.go.kr/index.do?language=ko>

### ③ 투자자로서 거주 비자(Residencia por Inversión) 신청:

**비자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비자의 경우는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수출투자부처 CEI-RD를 먼저 거쳐 해당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 비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 비자 사유서 (Carta de solicitud de visa sin notarizar: 법무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없음)

(스페인어로 작성)

해당 대사관의 영사과 혹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앞으로 신청자의 이름으로 작성. 신청인의 국적, 거주지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에 투자자로서 투자 계획과 설립 목적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사유서야 합니다.

#### 2. 비자신청양식서 (Formulario de Visa)

대사관홈페이지 [www.embadomkr.gob.do](http://www.embadomkr.gob.do), 도미니카공화국 영사홈페이지 [www.consuladord.com](http://www.consuladord.com) 에서 출력하시거나 대사관에 비치 해 놓은 양식 이용 가능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읽기 쉬운 활자체로 작성하여야 하며, 빈 공간이 없이 모두 기재 바랍니다. (양쪽 검지 지문, 서명 포함 그리고 미성년의 경우도 서명란에 이름으로 표기)

#### 3. 사진 (Una fotografia)

1 매 (사이즈 4cm x 5cm) 정면 사진으로 흰 바탕, 안경 미착용

#### 4. 여권 원본 (Pasaporte Original)

최소 18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 5. 주민등록증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주민등록증 컬러 사본, 만약 출생 국가가 아닌 다른 제2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거주증 사본

#### 6. 범죄기록조회서(Certificado de No Antecedentes penales)

관할 기간에 요청하여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공적 문서로 최근 5년 거주한 국가의 경찰청 혹은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은 문서 제출.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미성년자의 경우 불필요)

#### 7. 기본증명서(Certificado Básico) 혹은 출생증명서(Acata de Nacimiento)

주민자치센터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문서.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법무부) 필요함

## 8. 건강진단서 (Certificado Médico)

신청인이 전염성이 있는 병력을 앓았던 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한 해당 국가의 병원이나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음.

(건강진단서 :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폐결핵, 매독/ AIDS)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 9.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수출투자처 CEI-RD 에서 발급받은 투자자 증명서

- 직접투자자: CEI-RD의 증명서 사본 제출
- 수출자유공단(Regimen de Zonas Francas)에서 운영하는 회사: 공단 심의청의 증명서를 제출
- 국경개발프로젝트: 국경개발위원회(Consejo Nacional de Desarrollo Fronterizo)의 증명서 제출
- 관광개발프로젝트: 중앙수출투자처(CEI-RD) 또는 관광부로부터 허가 받을 수 있음

## 10. 기타 국가에서 받은 비자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11. 재정증빙서류: 가능한 서류 2가지

- \* 은행잔고증명서 - 국내 혹은 외국 은행에서 최근 발급 받은 증명서 / 영문 혹은 국문(국문의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 \* 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책, 급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영문 혹은 국문 (국문의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스페인어의 경우 그대로 제출
- \* 재산증명서- 부동산, 동산 소유증명서 원본/ 국문의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 \* 경제적 지불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국문의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 12. 비자 인터뷰 신청

전화나 이메일로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일을 예약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인터뷰해야 함.

## 13. 비자발급 소요시간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여 비자가 승인된 것은 아니며, 신청접수는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인의 비자를 접수하고 검토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로 발송한다는 것을 의미함. 예상 소요시간은 최소 3주. 그러나 최종결정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에서 결정하며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은 통보를 받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됨. 즉, 주한도미니카공화국 영사직원에게겐 비자 승인 결정권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이 비자를 취득하기 전 까지는 환불이 안 되는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유하며, 혹 비자 취득 소요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져서 미리 구입한 항공권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는 대사관의 책임이 없음을 미리 공고함.

#### 14. 비자 수수료

인터뷰 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하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외화계좌인 관계로 인터넷 뱅킹은 어려우십니다.

가까운 KEB하나은행에 가셔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 수취인: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 미화 U\$100.00
- KEB하나은행
- 계좌번호: 201-890010-11338

#### 참고사항: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화로 2258 외교센터 6층

(양재역 12번출구)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postille.go.kr/index.do?language=ko>

## ④ 이자 혹은 금리 소득자로서의 거주비자 (Residencia por Rentista) 신청:비자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비자 사유서 (Carta de solicitud de visa sin notarizar: 법무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없음)

(스페인어로 작성)

해당 대사관의 영사과 혹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앞으로 신청자의 이름으로 작성. 신청인의 국적, 거주지 그리고 거주비자의 신청의 목적과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는 사유서야 합니다.

### 2. 비자신청양식서 (Formulario de Visa)

대사관홈페이지 [www.embadomkr.gob.do](http://www.embadomkr.gob.do), 도미니카공화국 영사홈페이지 [www.consuladord.com](http://www.consuladord.com) 에서 출력하시거나 대사관에 비치 해 놓은 양식 이용 가능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읽기 쉬운 활자체로 작성하여야 하며, 빈 공란이 없이 모두 기재 바랍니다. (양쪽 검지 지문, 서명 포함 그리고 미성년의 경우도 서명란에 이름으로 표기)

### 3. 사진 (Una fotografia)

1 매 (사이즈 4cm x 5cm) 정면 사진으로 흰 바탕, 안경 미착용

### 4. 여권 원본 (Pasaporte Original)

최소 18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 5. 주민등록증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주민등록증 컬러 사본, 만약 출생 국가가 아닌 다른 제2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거주증 사본

### 6. 범죄기록조회서(Certificado de No Antecedentes penales)

관할 기간에 요청하여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공적 문서로 최근 5년 거주한 국가의 경찰청 혹은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은 문서 제출.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미성년자의 경우 불필요)

### 7. 기본증명서(Certificado Básico) 혹은 출생증명서(Acata de Nacimiento)

주민자치센터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문서.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법무부) 필요함

### 8. 건강진단서 (Cerficiado Médico)

신청인이 전염성이 있는 병력을 앓았던 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한 해당 국가의 병원이나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음.

(건강진단서 :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폐결핵, 매독/ AIDS)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9. 신청인의 국가에 귀속된 개인투자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Documentos que demuestre inversion personal, realizada en pais de origen):**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귀속된 국가에서 불로소득으로 투자 수익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거래 내역서 제출. 특히, 도미공 이민법 171-07, 제1조에 의거 축적된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잔고증명서, 부동산 임대 계약서, 혹은 주식거래내역을 증빙하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 금리소득(투자수익)을 초래한 회사의 주주 혹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상기의 서류들은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며, 매달 급여로 받는 수입은 적용되지 않음

**\*위의 금리소득(이자소득)자는 최소 금액이 월 미화 US\$ 2,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도미니칸 페소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11. 비자 인터뷰 신청 (모든 영사 업무는 오전만)

전화나 이메일로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일을 예약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인터뷰해야 합니다.

### 12. 비자발급 소요시간과 수수료 (모든 영사 업무는 오전만)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여 비자가 승인된 것은 아니며, 신청접수는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인의 비자를 접수하고 검토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로 발송한다는 것을 의미함. **예상 소요시간은 최소 3주. 그러나 최종결정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에서 결정하며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은 통보를 받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됨. 즉, 주한도미니카공화국 영사직원에게 비자 승인 결정권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이 비자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환불이 안 되는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유하며, 혹 비자 취득 소요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져서 미리 구입한 항공권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에 대해서는 대사관의 책임이 없음을 미리 공고함.

### 13. 비자 수수료:

인터뷰 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하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외화계좌인 관계로 인터넷 뱅킹은 어려우십니다. 가까운 KEB하나은행에 가셔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 수취인: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 미화 U\$100.00
- KEB하나은행
- 계좌번호: 201-890010-11338

### 참고사항: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화로 2258 외교센터 6층

(양재역 12번출구)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postille.go.kr/index.do?language=ko>

## ⑤연금수령자 & 은퇴연금 (Residencia por Pensión / Jubilación) 수령자로서 거주비자 신청: 비자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비자 사유서 (Carta de solicitud de visa sin notarizar: 법무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없음) (스페인어로 작성)

해당 대사관의 영사과 혹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앞으로 신청자의 이름으로 작성. 신청인의 국적, 거주지 그리고 거주비자의 신청의 목적과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는 사유서야 합니다.

### 2. 비자신청양식서 (Formulario de Visa)

대사관홈페이지 [www.embadomkr.gob.do](http://www.embadomkr.gob.do), 도미니카공화국 영사홈페이지 [www.consuladord.com](http://www.consuladord.com) 에서 출력하시거나 대사관에 비치 해 놓은 양식 이용 가능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읽기 쉬운 활자체로 작성하여야 하며, 빈 공란이 없이 모두 기재 바랍니다. (양쪽 검지 지문, 서명 포함 그리고 미성년의 경우도 서명란에 이름으로 표기)

### 3. 사진 (Una fotografia)

1 매 (사이즈 4cm x 5cm) 정면 사진으로 흰 바탕, 안경 미착용

### 4. 여권 원본 (Pasaporte Original)

최소 18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 5. 주민등록증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주민등록증 컬러 사본, 만약 출생 국가가 아닌 다른 제2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거주증 사본

### 6. 범죄기록조회서(Certificado de No Antecedentes penales)

관할 기간에 요청하여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공적 문서로 최근 5년 거주한 국가의 경찰청 혹은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은 문서 제출.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미성년자의 경우 불필요)

### 7. 기본증명서(Certificado Básico) 혹은 출생증명서(Acata de Nacimiento)

주민자치센터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문서.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법무부) 필요함

### 8. 건강진단서 (Cerficiado Médico)

신청인이 전염성이 있는 병력을 앓았던 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한 해당 국가의 병원이나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음.

(건강진단서 :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폐결핵, 매독/ AIDS)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9. 신청인의 국가에 귀속된 정부, 공공기관 혹은 근무한 외국계 개인회사로 부터 받은 연금수급 증명서 ( **Certificación del gobierno, organismo oficial o empresa privada de origen extranjero, donde prestó sus servicios**): 이 서류내용에는 비자 신청인의 일반적인 정보, 근무 기간, 직책(수행역할), 연금으로서 받는 금액이 반드시 명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 스페인어로 반드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받아야 합니다.)

**\* 위의 연금과 은퇴 연금 수령자는 최소 금액이 월 미화 US\$ 1,5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도미니칸 페소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11. 비자 인터뷰 신청 (모든 영사 업무는 오전만)

전화나 이메일로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일을 예약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인터뷰해야 합니다.

### 12. 비자발급 소요시간과 수수료 (모든 영사 업무는 오전만)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여 비자가 승인된 것은 아니며, 신청접수는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인의 비자를 접수하고 검토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로 발송한다는 것을 의미함. **예상 소요시간은 최소 3주. 그러나 최종결정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에서 결정하며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은 통보를 받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됨. 즉, 주한도미니카공화국 영사직원에게 비자 승인 결정권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이 비자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환불이 안 되는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유하며, 혹 비자 취득 소요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져서 미리 구입한 항공권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는 대사관의 책임이 없음을 미리 공고함.

### 13. 비자 수수료:

인터뷰 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하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외화계좌인 관계로 인터넷 뱅킹은 어려우십니다. 가까운 KEB하나은행에 가셔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 수취인: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 미화 U\$100.00
- KEB하나은행
- 계좌번호: 201-890010-11338

### 참고사항: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화로 2258 외교센터 6층

(양재역 12번출구)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postille.go.kr/index.do?language=ko>